

2026년 광명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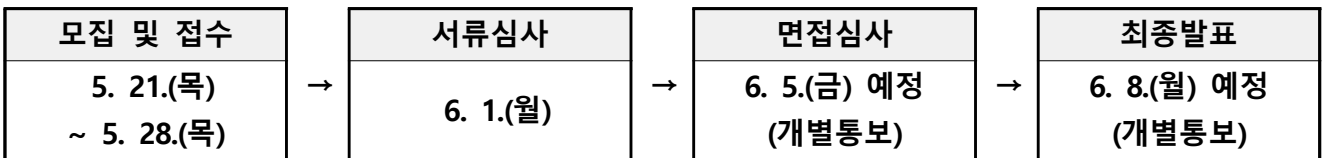
광명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실력 있는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접수기간 : 2026. 5. 21.(목) ~ 5. 28.(목) 09:00 ~ 18:00
2. 모집인원 : 2명
3. 강의수당 : 시간당 30,000원
4. 모집과목

연번	수강대상	프로그램명	운영시간		모집인원	비고
1	성인	보타니컬 아트	화	10:00~12:00	1명	
2		건강 스트레칭 1반	월, 수	09:30~10:30	1명	
3		건강 스트레칭 2반	월, 수	10:40~11:40		

※ 개설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·요일·강사·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5. 채용기간 : 2026. 7. 1. ~ 12. 31.
6. 모집방법 : 공개모집(서류전형 및 면접)
7. 모집일정



※ 면접심사 및 최종발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단독접수 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.

8. 접수방법 및 장소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(※ 방문 시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)
- 접수장소
 - 방문접수 :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(☎02-2680-5860)
 - 전자우편접수 : crystal-47@naver.com (발송 후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)

9. 응모자격 :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

-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(※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, 실기교사, 사범증, 강사증, 지도자 자격증, 기타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포함)
-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(민간자격증 포함) 또는 졸업(수료)증서(해당 과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포함) 소지자
- 해당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자(당해 기관 발행의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)

10. 선발기준 : 광명1동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선발 심사기준 등에 의거 결정

11. 제출서류(붙임 서식 참조)

- ① 강사지원신청서 1부.
- ②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1부.
- ③ 이력서(증명사진 3×4cm 첨부) 및 자기소개서 각 1부.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- ⑤ 강사 자격증 및 기타 강사자격 증빙서류 1부 이상(원본 지참)
 - 교사자격증, 사범증 등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1부.
 - 해당 분야 자격증명서 1부.
 - 강의경력증명서 1부(※ 당해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제출분만 인정).
 - 전문교육이수, 해외연수 증빙자료(최근 3년 이내 분에 한함) 각 1부.
 - 강의관련 저서, 상장 등 기타 증빙자료(최근 3년 이내 분에 한함) 각 1부.

12. 기타사항

- 강사모집 프로그램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,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제출한 서류들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수강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70% 미만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청사환경(시설물) 정비 등 사유발생에 따라 강의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13. 문의사항 : 광명1동 주민자치센터(☎02-2680-5860)

2026. 5. 20.

광명1동 주민자치회



[참고]

광명1동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선발 심사기준

□ 심사기준의 방향

1. 강의 관련 능력은 물론 다양한 방면까지도 평가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강사 선정
2. 지원자의 취득자격 중 동일·관련 자격은 상위 자격만을 인정
(※ 단, 동점일 경우,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우선순위로 함)
3. 기술기능관련 강사 선발 기준은 고용노동부(산업인력공단) 자격명칭을 준용
4. 문화취미·교양 등 전문경력관련 강사자격은 전국 법인 및 기관의 급수를 동일 인정
5. 기술계와 기능계자격 중 기술계 취득자격을 우선으로 하되, 해당 과정이 명시되어야 함
6. 아래의 “교육 강사 결격(해촉) 사유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사 선발 기준과 상관없이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강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음

□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결격·해촉 사유

-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, 위촉기간(근로계약기간)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 1. 강사지원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 2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
 3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
 4.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 “품위손상, 경솔한 언행, 부정행위” 및 다수 주민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
 5.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자치센터로부터 교육진행 등에 관한 “개선 권고”를 당해기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
 6. 수강생 설문조사 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
(수강생 모집률, 출석률, 탈락률 등 참고)
 7.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 (허위 출석 체크, 청강·대리 출석자 수강 방치 등)
 8.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무단결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결강
 - 결강하거나 보장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
 - 동료 강사를 비방 또는 음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동하는 경우
 - 지정된 교육시간 외 강의실 무단 사용 및 교육 외 사용 등
 9.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

□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지원(선정) 제한

-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위촉기간 중 『교육강사 결격 사유』 등으로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지원(선정)을 제한한다.